

1994년도
行政事務監査計劃(案)

行政財務委員會

'94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구정을 감사함으로써 區政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예산의 효율적인 審議를 위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여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4. 11. 28(월) - 12. 4(일)까지 (7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각호 해당기관

-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총무국(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 재무국(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 동사무소(1~22)

4. 감사위원 편성

위원장	간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김종구	한기태	고광택, 김대섭, 이강위, 이영규, 임병섭, 임창수, 정종태, 정준탁, 홍상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전문위원 사무국직원(1명) 속기사(1명)

5. 감사 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기관	장 소	감사방법	비 고
'94. 11. 28 (월)~11. 30 (수) 10:00	3 실 총 무 국 재 무 국 각 동 사무소	영등포구청	개 별 감 사	* 장소는 수감 기관에서 선정하여 수감
'94. 12. 1 (목)~12. 4 (일) 10:00	3 실 총 무 국 재 무 국 각 동 사무소	영등포구청	합 동 감 사	1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주요감사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문 화 공 보 실	1. 공보, 보도, 문화, 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2.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감 사 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구와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사항 3.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사항 4. 타기관에 의한 구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사항 5.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시 민 봉 사 실	1. 민원서류 및 진정서의 접수처리 2.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총 무 국	1. 인사행정 운영상태 2. 동행정지도 내용 3. 청사 및 각종 행정장비 유지관리 상태 4. 구기본계획 및 주요계획 수립, 집행, 심사분석 내용 5. 예산편성과 집행내용 6. 국민운동 주요계획 및 실적 7. 새마을소득사업 지원내용 8. 사회체육 진흥내용 및 체육교실 레저교실 운영내용 9.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상태 10. 민방위대의 동원 및 자원관리상태 11.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재 무 국	1. 국, 공유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내용 2. 각종 공사계약과 물품구매 및 관리상태 3. 지출 및 세입세출과 결산사항 4.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사항 5. 각종 공과금 부과 징수상태 6. 구세입 총괄 내용 7.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압류 내용 8. 현년도 세금 세원조사 부과 징수사항 9. 택지취득 허가, 신고의 처리 및 부담금 부과상태 10.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1994년도 업무계획서

나. 1994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

다. 1994년도 3,000만원이상 공사의 추진실적

라. 1994년도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

마. 1994년도 각종 민원(진정, 청원, 기타) 접수 처리부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모든 자료는 15부씩 제출을 요함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업무별 개별 감사를 실시한다.

(2) 개별감사 후 해당국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질의, 답변형식으로 한다.

(3) 특히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한다.

나. 감사자료제출 요구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2)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일일 3일전까지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3) 각 감사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사용한다.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다.

라. 감사진행순서

(1) 감사개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의 인사

(3) 관계공무원의 선서

(4) 업무현황보고

○간부 소개

○현황설명

(5) 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개별감사

(6)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7)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

(8) 감사종료 선언

마. 유의사항

(1) 감사대상 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3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사무전반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됨.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3)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시행령 제17조의 7)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4) 감사상의 주의 의무(시행령 제17조의 8)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침

(1) 감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 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작성요령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일일보고서와 감사결과건의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 보고서 및 감사결과건의서를 수합

(3) 간사는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5) 본회의 의결

별첨 : 1. 감사일일보고서

2. 선서서

3. 행정사무감사 관련법규

宣 誓

本人은 서울特別市 永登浦區議會가 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程에 의하여 所管事務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함에
있어서 證言이나 意見陳述의 要求에 대하여 良心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事實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僞證의 罰을 받기로 盟誓합니다.

199 年 月 日

機關名(住所):

위 宣 誓 人:

(印)

1994년도
行政事務監査計劃(案)

市民保社委員會

'94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보사위원회 소관에 전반적인 구정을 감사함으로써 區政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4. 11. 28(월) - 12. 4(일)까지 (7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각호 해당기관

- 시민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 동사무소(1~22)

4. 감사위원 편성

위원장	간사	위원	사무보조직원
김형수	김형기	김진국, 서홍선, 우일현, 윤태봉, 조연제, 최락희, 최수영, 최준화	시민보사위원회 전문위원 사무국직원(1명) 속기사(1명)

5. 감사 일정 및 장소

일자	감사대상기관	장소	감사방법	비고
'94. 11. 28 ~ '94. 12. 4	〈 시민국 〉 〈 보건소 〉 동사무소	영등포구청 각 동사무소 는 현지확인 감사	-현황보고 -자료확인 -업무별 개별감사 실시 -질의답변	* 장소는 수감 기관에서 선정하여 수감 1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주요감사사항

대상기관	주요 감사 사항
사회복지과	1. 구호, 복지, 노동조합설립,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대상기관	주요 감사 사항
	2.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가정복지과	1. 가정복지 종합계획 및 노인, 여성복지, 유아교육 사항 2. 청소년 종합 시책 수립 및 조정 사항 3.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위생과	1. 식품 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사항 2.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 허가 사항 3. 위생업소 위반사항 및 감시단속 업무 추진계획 수립 사항 4.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산업과	1. 시장의 지도 및 공장등록과 실태조사 사항 2.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사항 3. 연료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4. 가스안전 관리업무 및 가스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5. 농업 증산 및 장려 계획 사항 6.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환경과	1.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사항 2.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 사항 3. 자동차, 생활공해 단속 및 행정 처분 사항 4.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청소과	1.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체납 관리 사항 2. 진개 수거지역 책정 및 종합계획 수립 사항 3. 청소차량, 운전원 및 장비관리, 정화조의 유지관리 사항 4.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보건행정과	1. 지역 보건 기획, 평가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 2. 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보건지도과	1.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대상기관	주요 감사사항
의약과	2.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의약과	1.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약사법 등의 시행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1994년도 업무계획서

나. 1994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

다. 1994년도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라. 1994년도 각종민원(진정, 청원, 기타) 처리상황

마.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모든 자료는 15부씩 제출을 요함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업무별 개별감사를 실시한다.

(2) 개별감사 후 해당국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질의, 답변형식으로 한다.

(3) 특히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한다.

나. 감사자료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2)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실시 3일 전까지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3) 각 감사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사용한다.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다.

라. 감사진행순서

(1) 감사개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의 인사

(3) 관계공무원의 선서

(4) 업무현황보고 및 청취

○집행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현황설명

(5) 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개별감사

(6)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7)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

(8) 감사종료 선언

마. 유의사항

(1) 감사대상 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사무.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됨.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3)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시행령 제17조의 7)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4) 감사상의 주의 의무(시행령 제17조의 8)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침

(1) 감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 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작성요령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일일보고서와 감사결과건의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 보고서 및 감사결과건의서를 수합

(3) 간사는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5) 본회의 의결

별첨 : 1. 감사일일보고서

2. 선서서

3. 행정사무감사 관련법규

宣 誓

本人은 서울特別市 永登浦區議會가 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程에 의하여 所管事務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함에
있어서 證言이나 意見陳述의 要求에 대하여 良心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事實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僞證의 罰을 받기로 盟誓합니다.

199 年 月 日

機關名(住所):

위 宣 誓 人:

(印)

'94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구정을 감사함으로써 區政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예산의 효율적인 審議를 위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여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4. 11. 28(월) - 12. 4(일)까지 (7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각호 해당기관

- 도시정비국(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 건설국(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 동사무소(1~22)

4. 감사위원 편성

위원장	간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김명환	안주영	김동기, 양운섭, 이용주, 배기한, 권혁필, 이윤중, 최규락, 이증식, 심정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전문위원, 사무국직원(1명), 속기사(1명)

5. 감사 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기관	장 소	감사방법	비 고
'94. 11. 28 (월)~11. 30 (수) 10:00	도시정비국 건설국 각동사무소	영등포구청	개 별 감 사	* 장소는 수감 기관에서 선정
'94. 12. 1 (목)~12. 4 (일) 10:00	도시정비국 건설국 각동사무소	영등포구청	합 동 감 사	하여수감 1 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주요감사사항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주 택 과	1. 2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2. 민간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건립된 공동주택 관리, 용자금 회수 사항 3. 무허가 건물에 관한 진정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도시정비과	1.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사항 2.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지역교통과	1. 지역교통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개인택시 면허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건 축 과	1.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2.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관계 법규정비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지 적 과	1.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건설관리과	1.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점용 허가 및 이에 관련된 사항 2.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토 목 과	1.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굴착 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3.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대상기관	주요 감사사항
하수과	1. 하수도 시설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재심청구 심의에 관한 사항 4. 하수도 사용료 채납자에 대한 징수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1994년도 업무계획서

나. 1994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

다. 1994년도 3,000만원이상 공사의 추진실적

라. 1994년도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

마. 1994년도 각종 민원(진정, 청원, 기타) 접수 처리부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모든 자료는 15부씩 제출을 요함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업무별 개별감사를 실시한다.

(2) 개별감사 후 해당국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질의, 답변형식으로 한다.

(3) 특히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한다.

나. 감사자료제출 요구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2)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실시 3일 전까지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3) 각 감사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사용한다.

다. 증인등의 출석요구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다.

라. 감사진행순서

(1) 감사개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의 인사

(3) 관계공무원의 선서

(4) 업무현황보고

○간부 소개

○현황설명

(5) 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개별감사

(6)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7)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

(8) 감사종료 선언

마. 유의사항

(1) 감사대상 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사무 전반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됨.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됨.

(3)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시행령 제17조의 7)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4) 감사상의 주의 의무(시행령 제17조의 8)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침

(1) 감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작성요령

-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일일보고서와 감사결과건의서를 사전에 배부
- (2)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 보고서 및 감사결과건의서를 수합
- (3) 간사는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4)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 (5) 본회의 의결

- 별첨 : 1. 감사일일보고서
2. 선서서
3. 행정사무감사 관련법규

宣 誓

本人은 서울特別市 永登浦區議會가 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程에 의하여 所管事務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함에
있어서 證言이나 意見陳述의 要求에 대하여 良心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事實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僞證의 罰을 받기로 盟誓합니다.

199 年 月 日

機關名(住所):

위 宣 誓 人:

(印)